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의원
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숙자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“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‘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’을 ‘노동기본계획’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습니다.

또한,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·중복되는 노동 분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

마련하고자 ‘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’를 비상설로 전환하고, 위원회의 기능을 ‘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 분과위원회’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아무쪼록 노동 분야에서 세분화된 감정노동 분야의 기본계획과 자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서울시 노동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“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”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